

LPWA 이용약관

목차

제1장 총칙	3
제 1 조 (목적)	3
제 2 조 (약관의 적용)	3
제2장 계약체결	3
제 3 조 (계약의 종류)	3
제 4 조 (이용신청방법 등)	3
제 5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3
제 6 조 (번호부여 및 변경)	4
제 7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5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5
제 8 조 (회사의 의무)	5
제 9 조 (고객의 의무)	6
제 10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6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6
제 11 조 (서비스의 종류)	6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7
제 12 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7
제 13 조 (이용정지)	7
제 14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8
제 15 조 (해지)	8
제 16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0
제 17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0
제 18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11
제6장 요금 등	11
제 19 조 (요금 등의 종류)	11
제 20 조 (요금 산정방법)	11
제 21 조 (요금 등의 일시납)	12
제 22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12
제 23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12
제 24 조 (체납요금 징수 등)	12
제 25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2
제 26 조 (데이터 사용 이력 열람 및 교부)	12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13
제7장 손해배상	14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4
제8장 약정할인 등	14
제 29 조 (약정기간 설정)	14
제 30 조 (약정할인 제공)	14
제 31 조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	14
제 32 조 (할인반환금 면제)	15
제 33 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15
제 34 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15
부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LPWA 서비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LPWA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 ① LPWA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 3 조 (계약의 종류)

- ① 회사와 고객 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일시납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월 과금/청구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일정 기간/할인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일시 납부하고 사용하는 계약
 2. 일반이용계약 : 일시납 이용계약을 제외한 이용계약
- ②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4 조 (이용신청방법 등)

- ① 고객이 LPWA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종이 또는 On-line으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LPWA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LPWA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LPWA 서비스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경우
 4. 개인명의로 LoRa 100회선(단, LTE-M은 30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5. 법인명의로 LoRa 1,000회선(단, LTE-M은 50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6. 이용약관 제5장 제15조 (해지)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7.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단, 일시납 이용계약은 가능)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9.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0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0.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0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 개통 불가)
-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IoT전용망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의도용, 불법복제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제 6 조 (번호부여 및 변경)

- ① 회사는 회사가 할당 가능한 번호를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 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⑥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8 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LPWA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을 포함합니다)이 제시한 증서 등(별표 2 구비서류) 또는 전자인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 3 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솔루션 고객센터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LPWA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LPWA 회선과 연결된 Device 에서 수집한 비식별 정보(개인정보와 연계되지 않은 온도, 습도, 진공상태 등의 측정값)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LPWA 회선 및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 25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⑦ 회사가 판매한 LPWA Device 에 대해 고객이 A/S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솔루션 고객센터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LPWA 통신모듈을 공급했으나, 타 사업자가 제조/판매한 Device 에 대해서는 해당 Device 의 제조/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 합니다.
- ⑧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

시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⑪ 회사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를 전파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 또는 임대한 사물인터넷 단말을 이용자가 다른 주파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단말을 변경, 개조하거나 새로운 단말을 제공'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단말 관련 사항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뎀부분을 변경 또는 교체하는 것에만 해당함)

제 9 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신규가입, 통신 내역 제공 또는 통신 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Device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Device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이 제 2 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Device로 제 2 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사업자 등록증 등)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고객은 전자인증(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⑥ 고객은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LPWA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0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LPWA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회선 요금, 서비스 이용료, 결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정상적인 상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1 조 (서비스의 종류)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②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 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 12 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와 함께 개인 고객은 전화, 팩스 및 온라인(본인인증 필요)으로, 개인 외 고객(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등을 포함하며, 이하 '기업 고객'이라 합니다)은 대면,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Device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및 요금제 변경 등
 3. 주소변경, 개명개칭 등 위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고객의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 (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Device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Device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기업 고객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당사자는 [별표2]의 요건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솔루션고객센터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고객의 경우는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제 13 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장 제9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3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게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5.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일시납 이용계약의 경우 잔액 존재 시 제외함)
 6.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요금제의 기간약정 할인, 다회선 할인 등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8.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이하 본호에서 “부정사용 회선 등”이라 합니다)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9.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서상 서비스 주기보다 짧은 주기로 이용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3장 제9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단, 제1항 제9호의 사유에 따른 이용정지는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가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일시정지 기간은 1 회에 3 개월 범위 내에서 연 2 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정지기간 종료 익일 자동 정지 해제됨과 동시에 회사는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정지해제 사실을 안내합니다.

제 15 조 (해지)

- ① 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솔루션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솔루션 고객센터 이외에 본사가 지정한 특정 유통망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점 및 대리점 제외).
- ③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대리인이나 법인 회원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그리고 모든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각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2]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야 하며,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

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 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6. 제1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7. 제1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8. 제13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9. 제13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0.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 2) 내용증명 발송
- ⑥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⑦ 제3장 제9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⑧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6장 제 24 조(요금 등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Device ID, (해지)서비스 번호, 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

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제 16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6. 특정 Device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여 장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24 시간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 email, SMS 등)을 이용합니다.
-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Device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

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제거 및 일부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고객과의 협의 후 배상합니다.
-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관련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를 전파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 또는 임대한 사물인터넷 단말을 이용자가 다른 주파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단말을 변경, 개조하거나 새로운 단말을 제공'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단말 관련 사항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듈부분을 변경 또는 교체하는 것에만 해당함)

제 18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 3. 비 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6장 요금 등

제 19 조 (요금 등의 종류)

-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용 요금: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가. 월정액: 일정량의 데이터가 기본 제공된 것으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정액형 요금제)
 - 나.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다. 초과데이터 사용료: 초과데이터 사용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2. 부가사용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3.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 과 같습니다.

제 20 조 (요금 산정방법)

- ① 월정액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② 통화료 및 초과데이터 사용료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21 조 (요금 등의 일시납)

- ① 무기명 개인고객은 일시납 이용계약만 가능하며 해당 계약에 따라 전액을 일시납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고객 요청시, 고객에게 일시납이 가능한 정산 프로세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 부가사용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 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 23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의 요금안내서를 납입기일 5 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안내서를 동일한 주소로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체납요금 징수 등)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 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6 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음성/문자 발신통화내역 및 데이터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② 음성/문자 발신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 내에서 제공합니다.
- ③ 회사는 음성/문자 발신통화내역 제공 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방 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고객은 상대방 번호가 생략되지 않은 발신통화내역(이하 일반 통화내역)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표2>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기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점에 내방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데이터 통화내역(사용량 등) 제공 시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을 제공합니다. 단, LTE-M요금제에 한해 데이터 세부통화내역(IP정보 및 통신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URL정보에 한함)이 요청일로부터 2개월분 내에서 제공하며, 고객은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⑤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통화내역 및 데이터 세부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 회 3 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 일 단위로 계산하고, 2 일에 걸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②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보험 가입 후 1 년 6 월까지 10,000 원)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1 년 6 월)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 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 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장 약정할인 등

제 29 조 (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과의 협의 하에, 약정할인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10 년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이라 합니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약정할인 제공)

- ① 회사는 제 29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단일고객의 회선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약정기간의 설정, 약정할인액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제 31 조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

-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약정할인을 지급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할인반환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할인반환금 = 약정할인 금액 × 약정 사용기간(일)
 2.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하거나 또는 On-line으로 선택, 전자인증으로 확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금액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됩니다.)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 32 조 (할인반환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 31 조 제1항에 의한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 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으로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2. 고객의 사망/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시,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면제됩니다.

제 33 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LPWA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거나 또는 On-line 으로 확인하고 전자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biztworld.co.kr),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34 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개인/법인 명의 LTE-M 회선수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과 이용정지 대상에 대한 미납 기준 추가는 2018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